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40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의자 : 송기현 · 문진석 · 박용갑  
복기왕 · 손명수 · 염태영  
이연희 · 전용기 · 정준호  
주철현 · 허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 · 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의8 및 제1호의9 신설).
- 나.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서 분리하려는 경우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터리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성능평가대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지정 절차 및 취소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5조의14 신설).
- 라. 전기자동차등의 판매자와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판매 및 운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6 신설).
- 마.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7 신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평가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인증”을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으로 한다.

제3장의4(제35조의13부터 제35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의4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합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험회사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

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

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조립·수입·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

## 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유통전 안전검사등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시검사를,”을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 검사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자 동차

제46조제1항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 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자동차 검사대행자”를 “해당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 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 우

제74조제1항 본문 중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 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제1호 중 “제30조의6제1항”을 “제30조의6제1항, 제35조의14제3

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압용기검사”를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6 및 제1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제77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 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 및 정기 안전검사업무

제79조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5의6.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에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를

###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동축전지 성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기자동차등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1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5조의1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가 교환되어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제작·조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5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통전 안전검사등 및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 장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35조의1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제작·조립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35조의1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환하여 운행하

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제35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7. (생 략) <u>&lt;신 설&gt;</u>	제2조(정의) ----- -----. 1. ~ 1의7. (현행과 같음) <u>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 전지를 말한다.</u> <u>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평가된 사용 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u>
<u>&lt;신 설&gt;</u>	2. ~ 1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신설>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장의4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  
동차등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  
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  
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  
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  
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  
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  
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합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보험회사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

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의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신 설>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구동축전지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 ·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

자의 시설 ·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

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

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 · 조립하고자 하

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

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

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으로 등

록하여야 한다.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

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  
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등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  
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  
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  
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  
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  
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  
· 조립 · 수입 · 판매 또는 대여  
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 · 조립 · 수입 ·  
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신 설>

##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이하 “유통전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유통전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은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

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 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유통전 안전검사등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  
을 신청하려는 자동차해체재  
활용업자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

3. 제35조의13제2항제3호에 따  
른 보험회사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  
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 <신 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의 생산,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신 설>

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의 대행

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신 설〉

### 3. ~ 5. (생략)

## ② ~ ④ (생략)

####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 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

임시검사  
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받지 아  
니한 자동차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_\_\_\_\_  
\_\_\_\_\_

<p>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u>,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 <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 ----- ----- ----- -----. ② ----- ----- ----- <u>해당 성능평가대행자</u>, <u>자동차검사대행자</u>-----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u> <u>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u></p>
--	--



부과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 제3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 ----- ----- ----- ----- ----- -----.
1. 제21조, <u>제30조의6제1항</u> ,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1. ----- <u>제30조의6제1항, 제35조의14제3항</u>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 1. ~ 10의5. (생략)

〈신 설〉

〈신 설〉

11. ~ 18. (생략)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1. ~ 4. (생략)

### <신 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 1. ~ 10의5. (현행과 같음)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  
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 11. ~ 18. (현행과 같음)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6) \_\_\_\_\_

\_\_\_\_\_

\_\_\_\_\_.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u>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u>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 -----.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 평가 대행업무</u>
<u>&lt;신 설&gt;</u>	<u>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 전 안전검사등 및 정기 안전 검사업무</u>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79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별칙) ----- ----- ----- -----.
1. ~ 5의4. (생 략)	1. ~ 5의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5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u>
<u>&lt;신 설&gt;</u>	<u>5의6.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 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u>

	<u>대여한 자</u>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 ----- -----.
1. ~ 20의8. (생 략)	1. ~ 20의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20의9. 제35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u>
<u>&lt;신 설&gt;</u>	<u>20의10.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u>
<u>&lt;신 설&gt;</u>	<u>20의11.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u>
21. ~ 28. (생 략)	21. ~ 2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u>

	<u>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u>
9. ~ 11.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 11. (현행과 같음) ④ ----- ----- -----.
1. ~ 15의3. (생 략) <u>&lt;신 설&gt;</u>	1. ~ 15의3. (현행과 같음) <u>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등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u>
<u>15의4. · 15의5. (생 략)</u> 16. ~ 24. (생 략) ⑤ · ⑥ (생 략)	<u>15의5. · 15의6. (현행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와 같음)</u> 16. ~ 2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